

1. 개정이유

야드 트랙터에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통한 액화도시가스 충전이 가능하도록 도시가스충전사업의 유형에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요청하도록 하며, 하천횡단 매설배관의 설치·유지관리 기준을 개선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방지를 위해 가스보일러 설치 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신설(안 제2조제3항제 5호 및 별표 6의2 제5호 신설)

항만 내 야드 트랙터 연료의 액화도시가스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야드 트랙터에 액화도시가스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을 신설하고,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근거를 마련함.

나. 특정가스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및 완성검사 관련 규정 명확화
(안 제21조제8항 및 제25조제5항)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완성검사 및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다.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간소화(안 제49조)

사업자가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 및 양성교육 이수 유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라. 도시가스배관 매설확인제도 개선(안 제52조제1항 신설 및 안 제56조)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 전까지 도시가스배관이 해당 토지의 지하에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에 확인을 요청하도록 하던 것을 굴착공사 24시간 전까지 확인을 요청하도록 변경하고, 소규모급수공사의 경우에도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을 확인하도록 함.

마. 하천횡단 매설배관 설치·유지관리 기준 개선(안 별표 5 제3호가목 및 나목, 별표 6 제3호가목 및 나목)

- 1) 현재 하천을 횡단하는 매설배관을 설치할 경우 하천 종류별로 각각 기준 심도 이상으로 설치하고 그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하천 주변의 공사 여건 및 준설·홍수 등 환경 변화에 따른 하상변동이 일어난 경우에는 설치기준대로 유지하기가 곤란함.
-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해

서도 매설배관 설치 시 안전성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시설기준과 별도로 수리평가를 통한 유지관리 기준을 신설함.

3) 하천횡단 배관 매설 및 유지 시 사업자에게 하천의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의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탄력성을 부여하되, 안전성평가제도 및 수리평가를 통해 안전을 확보함.

바. 가스보일러 사용시설에 대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기준 추가[안별표 7 제3호가목2)라) 신설]

가스보일러 배기가스 누출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보일러가 설치되는 가스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가스보일러 주변 등에 설치하도록 시설기준을 추가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양수산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9. 11. 8. ~ 12.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4호 중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에 따른 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는 사업

제1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변경공사”를 “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8항 중 “경우”를 “경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로 한다.

제25조제5항 중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제48조제4호 중 “별표 20 제2호”를 “별표 13 제3호가목”으로 한다.

제4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

의 선임·해임·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5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52조제2항(중전의 제1항) 중 “법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를 “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4.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제52조의3제1호 중 “제52조제5항”을 “제52조제6항”으로 한다.

제56조의 제목 “(긴급 굴착공사 등)”을 “(긴급 굴착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 또는 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를 “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69조제2항제17호 중 “제52조제1항”을 “제52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7)을 8)로 하고, 같은 목에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인터록기구는 그 기능에 따라 적절한 관리가 되도록 할 것

별표 5 제1호라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 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별표 5 제3호가목1)사)① ㉠부터 ㉡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나목4)에 따라 조치한 경우 ㉡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5 제3호가목1)사)①㉡ 중 “경우”를 “경우(시가지 외에서 시가지로 변경된 구간에서 500m 이하의 배관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① ㉡를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이 되어야 한다.

-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한다.

$$L=220\sqrt{P} \cdot d$$

L: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 사용 압력(MPa)

d: 배관 직경(m)

-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이상

-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 이상

별표 5 제3호나목에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가목1)사)①㉠ 단서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유지 및 관리방법에 따를 것

나)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다) 주기적 조사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가목1)사)①㉠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할 것.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m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

- ①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수행할 것

- ② 수리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를 것

별표 5 제3호라목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설관리주체로부터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완료되었음을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이전이라도 시설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정한 시기에 확인할 수 있다.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 ㉠부터 ㉣까지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대하여 나목3)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 본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별표 6 제3호가목2)아)① 중 ㉠을 다음과 같이 한다.

㉠ 하천구역(「하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하천구역 중 제방 이외의 하심측(河心側)의 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하천, 수로 등을 횡단하여 매설하는 경우 배관의 외면과 계획하상높이(계획하상높이가 가장 깊은 하상높이보다 높은 경우에는 가장 깊은 하상높이를 말한다)와의 거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거리 이상. 다만,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안전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m 이상은 되어야 한다.

- (1) 하천구역: 4m 이상. 다만, 하천구역의 폭이 배관 바깥지름의 30배보다도 좁은 경우나 최고사용압력이 중압 이하인 배관을 하상폭(정비가 완료된 하천의 경우에는 양쪽 저수호안의 상부 사이의 폭을, 정비가 완료되지 아니한 하천의 경우에는 하천구역의 폭을 말한다) 20m 이하인 하천에 매설하는 경우로서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과의 거리가 다음의 계산식에서 산출한 수치 이상인 경우에는 2.5m 이상으로 한다.

$$L=220\sqrt{P} \cdot d$$

L: 하상폭 양 끝단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의 이격거리(m)

P: 사용 압력(MPa)

d: 배관 직경(m)

- (2) 소하천 및 수로(용수로·개천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2.5m

이상

(3) 그 밖의 좁은 수로: 1.2m 이상

(4) (1)부터 (3)까지에도 불구하고 하천의 바닥이 암반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배관의 외면과 하천바닥면의 암반 상부와의 거리: 1.2m 이상

별표 6 제3호나목3)을 4)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시가스사업자는 하천의 하상변동으로 인해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에 위해가 미치지 않도록 다음 기준에 따른 조치를 할 것

가) 가목2)아)①㉠ 단서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거리 이상으로 설치된 배관의 경우 안전성평가 결과에서 제시된 유지 및 관리방법에 따른 것

나) 하천을 횡단하여 매설된 배관상부 하상의 변동을 주기적으로 조사할 것

다) 주기적 조사결과 배관의 외면과 가장 깊은 하상과의 거리가 가목2)아)①㉠에 따른 거리보다 1/2 이상 줄어든 경우에는 다음의 수리평가를 실시한 결과와 검토의견에 따라 유지 및 관리할 것. 이 경우에도 최소 거리는 1.2m 이상으로 유지할 것

① 수리평가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제1항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신고한 자에 한한다) 또는 「기술사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한 기술사(수자원개발 분야를 전문분야로 하는 자에 한한다)가 수행할 것

② 수리평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세부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의견에 따른 것

별표 6의2 제1호가목9)가)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0조”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로 하고, 같

은 표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

가. 시설기준

1) 배치기준

가) 사업소는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에 설치할 것

나) 충전장소[지면에 표시한 탱크가 고정된 차량(이하 이 호에서 “충전차량”이라 한다)의 주정차 위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그 외면으로부터 제1종 보호시설(사

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까지 20m 이상, 제2종 보호시설까지 14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 처리설비로부터 30m 이내에 보호시설(사업소 안에 있는 보호시설 및 전용공업지역 안에 있는 보호시설은 제외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리설비의 주위에 도시가스 폭발에 따른 충격을 견딜 수 있는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을 설치할 것. 다만, 처리설비 주위에 방류둑 설치 등 액화산방지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충전장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의 외면과 전선, 화기(그 설비 안의 것은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장소 및 인화성물질 또는 가연성물질 저장소와의 사이에는 그 화기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것

마)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사업소경계(「항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의 경계를 사업소경계로 본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까지 1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충전장소 주위에 방호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바)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는 그 외면으로부터 사업소경계까지 10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것. 다만, 처리설비 및 충전설비 주위에 방호벽(높이 2 m 이상, 두께 12 c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방류둑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방류둑을 방호벽으로 본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5m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

사) 충전설비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경계까지 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아)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중심으로부터 철도까지는 3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할 것

자) 액화도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하기 위한 충전차량의 설치대수는 1대로 할 것

2) 기초기준

처리설비·충전설비 및 충전장소의 기초는 지반침하로 인하여 그 설비 및 충전차량에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저장설비 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그 탱크를 보호하기 위하여 부압파괴방지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는 야드 트랙터에 의한 충격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다만, 철근콘크리트제 방호벽 또는 방류둑 설치 등 액화산방지조

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4) 가스설비 기준

가) 처리설비와 충전설비는 환기가 양호한 곳에 설치할 것

나) 가스설비 및 충전설비의 재료는 그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다) 가스설비의 강도 및 두께는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라) 가스충전시설에 설치하는 처리설비·충전설비·기화장치 및 펌프 등은 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압력 및 환경에 적절한 성능과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하고, 위해의 우려가 없도록 설치할 것

마) 가스설비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5) 배관설비 기준

가) 배관의 재료는 도시가스의 취급에 적합한 기계적 성질 및 화학적 성분을 가지는 것일 것

나) 배관은 수송하는 도시가스의 특성 및 설치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위해의 염려가 없도록 설치하고, 배관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배관의 성능은 그 도시가스를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는 적절한 것일 것

6) 사고예방설비 기준

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및 처리설비에는 그 설비 안의 압력이 상용압력을 초과하는 경우 즉시 그 압력을 상용압력 이하로 되돌릴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나) 가스충전시설에는 화염 및 누출된 도시가스를 신속히 검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다)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설비 근처 및 충전설비로부터 5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긴급 시 도시가스의 누출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라) 펌프 등 위험성이 높은 가스설비에는 역류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할 것

마)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차량의 위치 및 충전상태를 모니터링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바) 가스충전시설에는 야드 트랙터의 오발진으로 인한 충전기 및 충전호스의 파손으

- 로 가스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사) 가스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전기설비는 누출된 가스의 점화원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방폭성능을 갖도록 할 것
- 아)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식방지·정전기제거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자) 가스충전시설에는 충전 중 야드 트랙터 등 항만 이동설비의 충돌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 충전설비 및 가스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충돌방지봉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차) 충전차량에 설치된 충전기에는 허가된 충전장소 외에서는 가스공급을 차단하는 인터록장치를 설치할 것
- 카) 충전차량에는 충전원 이외의 자가 충전할 수 없도록 적절한 신원확인 시스템을 설치할 것

7) 피해저감설비 기준

- 가) 가스충전시설에는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로부터 가스가 누출되는 경우 재해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액화산방지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나) 배관에는 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온도상승 방지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다) 사업소에는 사업소에서 긴급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긴급사태 발생시 그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압력계·액면계·비상전력설비·통신설비·소화기 등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것

8) 표시 기준

- 가)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는 도시가스를 취급하는 시설 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경계표지, 식별표지 및 위험표지 등 적절한 표지를 할 것
- 나) 충전장소의 지면에는 충전차량의 주정차위치와 진입 및 진출 방향을 표시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액화도시가스 충전장소”라는 표시를 할 것
- 다) 충전장소의 주위에는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충전 중 엔진정지”라는 표시를 한 게시판을 설치할 것
- 라) 가스충전시설에는 눈에 잘 띄는 곳에 충전순서, 충전 작업 준수사항 등을 포함한 안전수칙을 명시한 표지판을 설치할 것
- 마) 충전기앞(옆) 노면에 충전할 야드 트랙터 주정차선과 입구 및 출구 방향을 표시할

것

9) 그 밖의 기준

충전시설에 설치·사용하는 제품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인 경우에는 그 검사에 합격한 것일 것

나. 기술기준

- 1) 충전차량은 사업소의 지정된 장소에 주정차해야 하며, 충전작업 전에 충전차량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견인차량을 분리하고 확실하게 고정할 것
- 2) 충전차량에 의한 충전작업은 반드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이동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충전차량을 사업소 외의 지역에 주정차하지 않을 것
- 3) 충전작업은 「항만법」 제33조에 따라 시설장비의 검사를 받은 야드 트랙터에만 실시할 것
- 4) 충전작업 중 야드 트랙터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충전작업 전에 야드 트랙터의 엔진정지 및 정차상태를 확인할 것
- 5) 충전 중에는 충전차량으로부터 5m 이내에 다른 야드 트랙터의 접근을 금지할 것
- 6) 충전 중에는 충전장소 및 야드 트랙터 주위에 충전작업 관련자 이외의 자의 출입을 금할 것
- 7) 그 밖의 안전유지 기준, 충전 기준, 점검 기준, 수리 및 청소 기준에 관하여는 제4호 나목[1)라)·1)마)·1)아)·2)가)·2)라)는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을 따를 것

다. 검사기준

- 1)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의 검사 항목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시설이 적합하게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의 검사항목으로 할 것

검사 종류	검사항목
가) 중간검사	가목의 시설 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1)(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3)(방호벽의 기초설치 공정만 해당함) 4)(가스설비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5)(배관을 지하에 매설하는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하는 부분을 매몰하기 직전의 공정 및 배관의 설치가 완료되어 기밀 또는 내압 시험을 할 수 있는 상태의 공정만 해당함)

나) 완성검사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다) 정기검사	① 가목의 시설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② 나목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항목 중 해당 사항
라) 수시검사	각 시설별 정기검사 항목 중에서 다음에서 열거한 안전장치의 유지·관리 상태 중 필요한 사항과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 이행 상태 ① 안전밸브 ② 긴급차단장치 ③ 화염 및 가스누출 검지정보장치 ④ 소화기 또는 소화안전장치 ⑤ 안전제어장치 ⑥ 안전용 접지기기, 방폭전기기기 ⑦ 그 밖에 안전관리상 필요한 사항

2) 중간검사·완성검사·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는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시설이 검사항목에 적합한지 여부를 명확하게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것

라. 그 밖의 기준

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과 관련하여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적용할 것

별표 7 제3호가목2)에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6호나목 중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라) 일산화탄소 경보기(「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를 받은 일산화탄소 가스누설경보기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가스보일러의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 배기가스가 누출될 경우 이를 신속히 검지하여 알려줄 수 있도록 가스보일러 주변 또는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다음 (1) 또는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가스보일러를 옥외에 설치한 경우

(2) 가스보일러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1조의2 제2항제1호에 따른 가스용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표 7의2 제4호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4 제4호가목의 교육대상자란 2) 중 “책임자와 안전관리원”을 “책임자”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교육대상자란 3)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표 비고 제5호 중 “별표 22”를 “별표 19”로 한다.

3) 도시가스사용자동차(야드 트랙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 운전자
별지 제35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5호, 제52조제1항·제2항, 제56조, 별표 5 제3호가목1)사) 및 같은 호 나목4), 별표 6 제3호가목2)아) 및 같은 호 나목3) 및 별표 6의2 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스공급시설의 기술기준에 관한 적용례)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가스공급시설에 대하여 제27조의3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받아 하천매설 배관의 심도를 조사한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내에 별표 6 제3호나목3)다)의 개정규정에 따라 배관을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제3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스보일러(2020년 8월 5일 이후 제

조하거나 수입한 가스보일러를 말한다)를 설치(교체설치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보일러를 설치한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시설에 가스보일러를 설치하여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자는 2021년 8월 4일까지 별표 7 제3호가목2)라)의 개정규정에 따라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제5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3개월 동안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① · ② (생 략)	제2조(정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조제4호의2에서 “산업 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 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③ -----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액화도시가스 자동차 충전사 업: 배관 또는 저장탱크를 통 하여 공급받은 액화도시가스 를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4 제8호에 따른 야드트 랙터를 포함한다)에 충전하는 사업	4. ----- ----- ----- -- 자동차[「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8호에 따른 야드 트 랙터(이하 “야드 트랙터”라 한 다)를 포함한다]----- --
<신 설>	5. <u>이동식 액화도시가스 야드 트랙터 충전사업: 자동차에 고 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도 시가스를 야드 트랙터에 충전 하는 사업</u>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제12조(공사계획의 승인 신청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1조제4항제3호에서	⑤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란 다음 각 호의 공사를 말한다. 1. (생략) 2. 정압기지 또는 정압기에 대한 공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가.·나. (생략) 다. 계량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u>변경공사</u> 라. (생략) ⑥·⑦ (생략)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② (생략) ④ (생략) 제21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 ⑦ (생략) ⑧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 사용자가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7에 따라 내압용기장착검사를 받은	----- ----- ----- -----. 1. (현행과 같음) 2.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u>변경공사(유량 또는 기종의 변경공사만 해당한다)</u> 라.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20조(시공기록 및 완공도면의 보존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1조(시공감리·중간검사 및 완성검사의 대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 ----- ----- -----
---	---

경우에는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5조(정기검사) ① ~ ④ (생략)

⑤ 제20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은 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⑥·⑦ (생략)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략)

4. 가스사용자는 도시가스로 연료를 전환하기 전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0 제2호에

경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

제25조(정기검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자동차관리

법」 제43조제1항 또는 「건설

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

---.

⑥·⑦ (현행과 같음)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

-----.

1. ~ 3. (현행과 같음)

4. -----

----- 별표 13 제3호가목

따른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
계약을 해지하고, 제1호 및 제
2호에 따른 용기등의 철거와
안전조치가 된 것을 확인한
후 도시가스를 사용할 것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
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
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
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
에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
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은 안전관리자
의 자격이 「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인 경우에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안전관리
자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
전관리자의 선임·해임·퇴직
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신 설>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 설>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① 굴착공사자는 법 제30조의3 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에 관하여 굴착공사를 시작하기 24시간 전까지 법 제30조의2에 따른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이하 “정보지원센터”라 한다)에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요청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0-----

-----.

1. ~ 3. (현행과 같음)

4.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

유하는 토지에서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가스사용자(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집합건물의 경우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리인을 말한다)의 인적사항 및 시설명

②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하려는 자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경우로서 그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굴착공사자가 굴착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본다.

③ 정보지원센터는 제1항에 따라 굴착계획을 통보받으면 굴착공사자에게 접수번호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허가관청이 굴착계획에 관한 정보를 정보지원센터에 제공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에 접수번호를 부여하여 굴착공사자가 정보통

③ 제2항-----

-----.

④ ----- 제2항-----

-----제3항-----

신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⑥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굴착계
획의 유효기간은 15일로 하고,
굴착계획을 정보지원센터에 통
보한 날 또는 굴착공사 예정일
로부터 15일이 지난날까지 제52
조의2에 따라 굴착공사 현장 위
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
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굴착
공사자는 굴착계획을 다시 통보
하여야 한다.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
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
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
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52조제5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음을 통지받은 시점
으로부터 24시간

2. (생략)

제56조(긴급 굴착공사 등) 굴착공
사자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

⑤ · ⑥ (현행 제4항 및 제5항과
같음)

⑦ 제2항-----

-----.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

-----.

1. 제52조제6항-----

2. (현행과 같음)

제56조(긴급 굴착공사) -----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위한 <u>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u> 또는 <u>급수(給水)를 위한 길이 10미터 이하·너비 3미터 이하의 굴착공사(이하 “소규모급수공사”라 한다)</u>를 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입회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제69조(규제의 재검토) ① (생략)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16. (생략) 17. <u>제52조제1항</u>에 따른 굴착공사자의 굴착계획 통보 의무: 2015년 1월 1일 18. ~ 20. (생략)	----- ---<u>굴착공사(이하 “긴급굴착공사”라 한다)</u>----- ----- ----- ----- ----- ----- ----- ----- ----- ----- -----. 제69조(규제의 재검토)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 1. ~ 16. (현행과 같음) 17. <u>제52조제2항</u>----- ----- ----- 18. ~ 20. (현행과 같음)
---	--